

『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10월 18일

나. 발 의 자 : 장세구, 권재욱, 김재상, 송용자, 양진오(5인)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0월 29일

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장 세 구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읍·면지역에서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가축의 마릿수 변경(안 제3조)
 - 소 : 10마리 이하 → 8마리 이하

○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지정(안 별표 1)

- 읍·면·동 축종별 제한구역 추가
 - 선산읍(완전리), 산동면(성수리)
 - 고아읍(신촌리, 황산리, 횡산리, 외예리, 내예리, 예강리, 향곡리, 오로리, 봉한리)
 - 옥성면 : 농소1리 → 농소리
 - 도개면 : 궁기1리 → 궁기리
-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 확대
 - 소(한우, 육우)·양·사슴·말 400마리 미만 : 50m 이내 → 500m 이내
 - 소(한우, 육우)·양·사슴·말 400마리 이상 : 70m 이내 → 500m 이내
 - 젖소 400마리 미만 : 75m 이내 → 500m 이내
 - 젖소 400마리 이상 : 110m 이내 → 500m 이내
- 「하천법」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구역 추가 지정

○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무허가 축사에 대해 적법화 이행
기간 유예기간 적용 조문 신설(안 부칙 제4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하천법」, 「수도법」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중 우

○ 본 「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은

- 읍·면 지역의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가축의 마릿수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 확대지정에 대한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인근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